

[01]월 보건관리 상태보고서- 간호사

사업장명: 엠에스바이오텍(주)

* 상태보고서는 사업주(관리책임자)가 선람하여 내부결재 후 신속한 조치를 해야합니다.

결				
재				

1. 보건관리상태

방문일자: 2026-01-28

사업자 현황	☐ 광업 ☒ 제조업 ☐ 건설업 ☐ 비제조업				
	업종분류: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				
근로자현황	총 근로자수 : 105명			입사자수	퇴사자수
전 월					
당 월	105명 사무직: 남 0명 / 여 0명 사무직 외: 남 64명 / 여 41명			0명	0명
산업재해 발생현황	총 재해자수	사망자수	부상자수	업무상질병 재해	재해율(%)
전 월	0명	0명	0명	0명	
당 월	0명	0명	0명	0명	0
연누적현황	0명	0명	0명	0명	0

2. 업무수행내용

◎ 작업환경 관리

업무수행내용	점검결과 (보건관리상태)				지도내용(개선 의견)
	개 선	진 행	미 개 선	미 해 당	
근골격계질환 관리	○				2025.09 정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확인 3주년 주기로 2028년 정기조사 실시 하여야 합니다.

◎ 건강관리

업무수행내용	점검결과 (보건관리상태)				지도내용(개선 의견)
	개 선	진 행	미 개 선	미 해 당	
건강진단 관리	○				추후관리 지도 - 질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,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추후관리지도 결과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함.

3. 종합의견 위탁업무수행(총괄)(세부업무내용 및 개선의견)

상담자선정

- 보건관리 상 위험군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건강검진 자료 및 기타 보건관리상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작업과정별로 관리감독자나 관리자의 판단하에 상담대상을 선정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령근로자, 이주노동자, 교대작업자, 파악된 만성질환 유소견자 및 음주/흡연자 위주로 상담인원을 선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검진후 결과요요청

- 건강검진결과표와 사후관리소견서는 개별 검진기관에 요청하여 취합하여 보관하여 주시고, 사후관리를 위해 대행 간호사에게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검진결과가 조속히 확보되어 사후관리소견에 맞추어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한 유소견자를 중심으로 건강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

선임서류 보존 안내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(전문기관 포함)를 선임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1항에 따라 선임서류를 만들고 3년간 보관해야합니다 따라서 보건관리대행 선임신고서류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
- 선임신고서류 양식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.

안전보건관리책임자

-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(일부 사업 :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, 그 외 사업 :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.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참고 바랍니다)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역할로, 보건관리 업무 상태보고서를 확인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보건관리 대행 서류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상태보고서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결재를 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

상태보고서 결재, 보관

-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(일부 사업 :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, 그 외 사업 :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.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참고 바랍니다)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역할로, 보건관리 업무 상태보고서를 확인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보건관리 대행 서류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상태보고서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결재를 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

근골예방지도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른 정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3년주기 실시 확인 (2025.09 실시 2028 실시예정) (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근골격계부담작업 참고 바랍니다)
- 근골격계 산재 발생,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과 설비 도입 및 작업환경 변경시 1개월 이내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 발생시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바랍니다
- 5kg 이상 중량물 취급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에 따라 중량물 안내 표지를 부착해야합니다 부착되어있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 미부착으로 분류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
건강상담완료

- 건강상담의 상세 내역은 별지를 참조바랍니다.

방문일자	2026-01-28	사업장 담당자	직위: 부장 성명: 김철민 	보 건 관 리 자	자격: 간호사 성명: 지 청 아 
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